

6.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799호 1998. 5.19

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마을 공동시설·공익시설·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철거된 후 2년이내에 시장·군수·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었으나,

앞으로는 이축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철거된 후 언제든지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

〈법제처 제공〉

주요 내용

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 및 광역시장”으로 하고, 동항 제3호중 “농촌근대화 촉진법 제37조제1항제2호”를 “농지개량 조합법 제41조제1항제2호”로, “농지개량시설”을 “기반시설”로 한다.

제19조의4제2항제2호중 “부락공동시설”을 “마을공동시설”로 하고, 동항 제3호마목중 “산림조합”을 “임업협동조합으로 하고, 동

호마목중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, “부락공동시설”을 “마을공동시설”로, “철거후 2년이내의 이축”을 “이축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2항중 “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”을 “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의2제2호, 제58조의2제2항 및 제59조중 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”를 각각 “특별시 및 광역시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3호, 제5조의 3 본문, 제7조의2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8호중 “건설부령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
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, 제10조의2제5항·제6항 본문,
제25조제3항, 제27조 본문 제28조제1항 및
제52조제2항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건설
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”
를 “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60조제1호중 “서울특별시와 직할시”를

“특별시 및 광역시”로 한다.

제61조제2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장 및 직
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 및 광역시장”으로 한
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